

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3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 
김성준, 김형재, 남창진,  
문성호, 민병주, 박승진,  
박영한, 박철성, 봉양순,  
서상열, 신복자, 아이수루,  
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 
윤종복, 이상욱, 이영실,  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 
전병주, 정준호, 한 신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,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)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, 법령 개정 이후에도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아닌 민간위탁 선정절차를 따르고 있어 조례상의 “위탁”을 “관리대행”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(환경부 2018.10)」을 적용케 하려는 것임 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 또는 수탁업체로 표기된 부분을 관리대행, 관리대행업자로 개정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.(안 제2조~제14조)

나. 「하수도법」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관리대행 선정절차를 따르되 관리대행 최초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상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.(안 제7조제3항 신설)

다. 대행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대행비용 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(안 제10조제3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중계펌프장”을 ““중계펌프장”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“수탁 기관”이라 함은 제2장의”를 ““관리대행업자”라고 함은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의”로 하고, “위탁받은 기관을”을 “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6항 중 “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”을 “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”를 “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수선의 시행기관”을 “수선은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중 “위탁”을 “관리대행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탁할”을 “관리대행할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1.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
2.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8조 중 “수탁기관에 위탁사무”를 “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”을 “관리대행할”로 수정한다.

제10조 제목 중 “수탁기관”을 “관리대행업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수탁기관을”을 “관리대행업자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위탁사무의”를 “관리대행사무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위탁사무”를 “관리대행사무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수탁기관은 위탁받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중 “수탁기관의”를 “관리대행업자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수탁기관은 위탁받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”으로, “위탁받은”은 “관리대행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수탁기관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수탁기관은 위탁받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수탁기관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”으로, “위탁조건”을 “관리대행조건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수탁기관에”를 “관리대행업자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수탁기관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”으로, “수입·지출에”는 “지출에”로, “공인회계사”는 “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”로, “3월”은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수탁기관에”를 “관리대행업자에”로, “위탁사무”를 “관리대행사무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위탁사무 처리가”를 “관리대행사무 처리가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수탁기관에”를 “관리대행업자에”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중 “위탁의 취소”를 “관리대행의 해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위탁을 취소할”을 “관리대행을 해지할”로 하고, “수탁기관에”를 “관리대행업자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1호 중 “수탁기관이”를 “관리대행업자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2호 중 “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”을 “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3호 중 “위탁을”을 “관리대행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위탁이”를 “관리대행이”로, “수탁기관은”을 “관리대행업자는”으로 하고, “위탁받은”을 “관리대행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계약 체결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<u>중계펌프장</u>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·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.</p> <p>4. "<u>수탁 기관</u>"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·운영을 <u>위탁받은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5.~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"<u>중계펌프장</u>"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"<u>관리대행업자</u>"라 함은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의 -----</p> <p>----- <u>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</u>를 -----.</p> <p>5.~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의2 (편의시설의 사용료 등)</p> <p>①~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<u>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의2 (편의시설의 사용료 등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징수를 편의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</u> -----.</p>
<p>제6조(설치·개축 또는 수선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·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을 <u>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</u>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·개축 또는 <u>수선의 시행기관은</u>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설치·개축 또는 수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</u>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수선은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위탁할 수 있는</u>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③ <u>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(관리·운영의 <u>관리대행</u>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관리대행할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·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p>	<p>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</p> <p>1.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</p> <p>2.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8조(관리·운영지원)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관리·운영지원)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관리·운영시설)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.</p>	<p>제9조(관리·운영시설) ----- ----- 관리대행할 ----- -----</p>
<p>제10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 및 기술수준</li> <li>2. 재정적인 부담능력</li> <li>3.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</li> <li>4.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</li> </ol> <p>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</p>	<p>제10조(관리대행업자 선정)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리대행사무의 ----- -----</li> <li>2. 재정적인 부담능력</li> <li>3.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</li> <li>4. 관리대행사무 ----- -----</li> </ol> <p>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.</u></p>	
<p>제11조(조직 및 인원) <u>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조직 및 인원) <u>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를 -----</u> -----.</p>
<p>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<u>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·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② <u>수탁기관은</u>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·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<u>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·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④ <u>수탁기관은</u>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<u>위탁조건</u>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시장은 <u>수탁기관에</u>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·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.</p> <p>⑥ <u>수탁기관은</u> 관리·운영의 <u>수입·지출에</u> 관한 사항을 <u>공인회계사</u>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<u>3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관리대행업자의 의무) ① <u>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-----</u> -----, <u>관리대행 -----</u> -----.</p> <p>② <u>관리대행업자는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-----</u> -----.</p> <p>④ <u>관리대행업자는 -----</u> <u>관리대행조건 -----</u> -----.</p> <p>⑤ ----- <u>관리대행업자에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⑥ <u>관리대행업자는 ----- 지출에 -----</u> <u>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-----</u> ----- ----- <u>3개월 -----</u>.</p>
<p>제13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<u>수탁기관에</u>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<u>위탁사무</u>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</p>	<p>제13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<u>관리대행업자에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관리대행사무 -----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· 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·검사 또는 감사결과 <u>위탁사무 처리가</u> 위법·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<u>수탁기관에</u>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관리대행사무 처리가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관리대행업자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위탁을 취소할</u>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<u>수탁기관에</u>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수탁기관이</u>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</li> <li>2. <u>수탁기관이</u> <u>위탁사무를</u>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</li> <li>3. 그 밖에 공익상 <u>위탁을</u>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위탁이</u> 취소되는 때에는 <u>수탁기관은</u> 지체없이 <u>위탁받은</u>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관리대행의 해지) ① ----- ----- <u>관리대행을 해지할</u> ----- ----- <u>관리대행업자에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관리대행업자가</u> ----- -----</li> <li>2. <u>관리대행업자가</u> <u>관리대행사무를</u> ----- -----</li> <li>3. ----- <u>관리대행을</u> ----- -----</li> </ol> <p>② ----- <u>관리대행이</u> ----- ----- <u>관리대행업자는</u> ----- <u>관리대행</u> -----.</p>